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그 권리

천명주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총주지회 노안부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과정에서 다치고, 병들지 않도록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호와 예방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본래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다면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안법 52조에는 이러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위험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면 뒤따르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징계, 협박입니다. 사실상 작업중지를 법에만 존재하는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며 해외수출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ISO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정작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은 무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내세우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앞뒤가 다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안전사고 등 현장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던 회사의 방침은 사라지고, 임시방편과 온갖 변명을 앞세워 안전사고 발생에 의해 중단된 라인을 가동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면 과연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여 앞으로 산안법이 더 개악된다면 현실은 더욱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 우려됩니다.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지난 4월 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작업중지권 증언대회’가 열려 증언자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증언대회 자리에서 여러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강풍과 강우, 폭설 등 기상이변의 상황에서도 야외작업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다른 누군가는 민원인이나 고객을 상대하며 잦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지만, 감히 자리를 떠나지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제조사업장에서는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정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했더니, 회사가 작업을 중지시킨 노동자대표와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 4월 2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증언대회.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인 천명주 노안부장이다. 출처 : 노동과세계 송승현

저도 증언에 함께 했습니다. 충주 모비스는 타 사업장과 달리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기초로 작업중지가 2020년도부터 현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며 ‘생산이 우선이다. 라인을 정지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현장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1월 2일 작업자가 손이 크게 베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사고수습과 긴급대책 이후 1월 19일까지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라인을 재개하였습니다. 라인 가동이 우선이었던 걸까요? 이후 회사는 태도를 바꿔 ‘근본대책이란 없다’라며, ‘작업자 교육 잘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라인을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 라인을 정지하였고 이에 회사는 작업중지를 단행한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가 벌금을 각오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노사 협의 사항이든 단체협약이든 한날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리,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작업중지에 대해 부당징계, 손해 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1년에 평균 2천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면, 이 시간 동안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지키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